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2055	김원이의원	2024. 7. 22.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4. 9. 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
2205697	김남근의원	2024. 11. 19.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4.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7192	민병덕의원	2024. 12. 31.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5. 4. 2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9203	이강일의원	2025. 3. 20.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9345	강준현의원	2024. 3. 25.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10531	이헌승의원	2025. 5. 15.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5.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12704	박홍배의원	2025. 9. 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25.)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25. 11. 27.)는 위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항 신설, 제13조의2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고,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중전의 제17항)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경비가”로 한다.

⑰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주요 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보증의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제2조, 제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략)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 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 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u>⑰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u> <u>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u> <u>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u> <u>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u> <u>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u> <u>따른 에너지를 말한다)로서 그</u> <u>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u> <u>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u>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 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u>가격이</u>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 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⑱ ----- ----- <u>가격 또</u> <u>는 주요 에너지 경비가</u> ----- ----- ----- -----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생략)

③ ~ ⑫ (생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원재료,
주요 에너지-----

4.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건 공사의 공사금액
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